

제 6 장 긴급수입제한조치

제6.1조 긴급수입제한조치

1.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.

2.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이 협정 제19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